

성 남 시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시보

선
람

기 관 의 장

제1881호

2023년 9월 18일 (월)

차 레

규 칙

- 성남시 규칙 제2031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3

입 법 예 고

- 성남시 공고 제2023-2293호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6
- 성남시 공고 제2023-2337호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1
- 성남시 공고 제2023-2345호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33

고 시

- 성남시 고시 제2023-209호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정정고시..... 39
- 성남시 수정구 고시 제2023-20호 하천 점용허가 고시(둔전동 211-1 외 11필지)..... 52
-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3-31호 하천점용 허가 기간연장 고시(구미동 99번지, 탄천)..... 53

공 고

- 성남시 공고 제2023-2273호 도시계획시설(폐기물처리시설)사업 공사완료 공고..... 54
- 성남시 공고 제2023-2287호 성남 도시계획시설(한솔어린이공원)사업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
계획인가 사전 열람공고..... 55
- 성남시 공고 제2023-2291호 성남 도시관리계획(주차장,공원,도로)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주민의견 청취 공고..... 57
- 성남시 공고 제2023-2308호 차량의 운행 제한 공고..... 66
- 성남시 공고 제2023-2334호 공인등록 공고..... 68

회 란

발행: 성남시 편집: 공보관

성남시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친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성 남 시 장 신 상 진 

2023년 9월 18일

성남시 규칙 제2031호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례」”를 “「성남시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로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 “성남시 자원봉사센터”를 “성남시자원봉사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업무관련 국장 1명이”를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으로, “된다.”를 “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센터”를 “재능기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기획총무팀장”을 “운영지원부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센터의 직원”을 “센터 직원의”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1이상”을 “1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규칙에”를 “규칙에서”로 한다.

제9조 단서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위원의 해임)”을 “(위원의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해임”을 “해촉”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1명, 사업본부장 1명, 운영요원 10명”을 “1명, 운영요원 13명”으로 한다.

제12조제4항 단서 중 “있다.”를 “있다”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사무국장 및 사업본부장”을 “사무국장”으로,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코디네이터인 운영요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제16조제4항 중 “센터에”를 “센터”로, “외의”를 “외에”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수탁법인에”를 “수탁법인이”로 한다.

제17조의 제목 “(직원의 · 복무)”를 “(직원의 복무)”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

문 중 “센터직원의 정년, 근무기간”을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으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지도감독)”을 “(지도·감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다른”을 “따른”으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및 자원봉사자”를 “또는 자원봉사자”로, “확인증 (별지 제9호 서식)”을 “확인증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2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서는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및”을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1, 별표 2, 별표 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자치행정과
입 안 자	자치행정과장	전 재 환
	민간협력팀장	권 용 미
	주 무 관 (연 락 처)	박 수 아 (729-2322)

[별표 1]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 기 구 》



《 정 원 》

구분	계	센터장 (5급)	사무국장 (6급)	운영요원	
				부장 (6~7급)	담당 (8~9급, 기타)
정원	15	1	1	4	9

[별표 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센터장	○센터 업무 및 대외 협력 총괄	
사무국장	○센터 행정, 사업 및 행사 총괄 ○조직 및 인사 관리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지원부	○인사, 복무, 포상, 후생복지 관리 ○예산, 회계, 일반사무, 문서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재난재해 자원봉사 지원 업무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활동지원부	○자원봉사 단체·수요처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관리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지원 업무	
자원연계부	○지역 네트워크 연계 협력 사업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추진 ○재능나눔 단체 및 수요관리 ○재능기부자, 활동가 모집 관리	
성장지원부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물 간행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 교육 ○미담수범사례 발굴 ○자원봉사자 주간운영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별표 3]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경 력 및 자 격 기 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 터 장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 (6급)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운 영 요 원	7급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타직 (코디네이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 자원봉사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성남시 재능나 눔 및 자원봉사활동지원에 관한 조 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에 따라 센터를 운영하는 법인이란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 3. (생략) ② (생략)	제2조(법인의 범위) ① 「성남시 재능나 눔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에 관한 조 례」----- ----- -----.
제3조(민간위탁) ① 성남시장(이하 “시 장”이라고 한다)은 조례 제6조제1항 에 따라 <u>성남시 자원봉사센터</u> (이하 “센터”라고 한다)를 위탁운영을 하고 자 할 때 다음 요건을 고려하여 법인 을 선정하여야 한다. 1. ~ 5. (생략) ② (생략)	제3조(민간위탁) ① ----- ----- ----- <u>성남시자원봉사센터</u> ----- ----- -----.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생략) ① 시장 또는 수탁자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정책결정기구로서 <u>성남 시 자원봉사센터</u>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다만, 수탁자는 이사회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 단체, 수요처의 각 대표와 그 밖에 센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저명인	제4조(운영위원회 구성) (현행과 같음) ① ----- ----- <u>성남 시자원봉사센터</u> ----- -----. ----- ② ----- ----- -----

사를 포함한 2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과 업무관련 국장 1명이 당연
직 위원이 된다..

③ 재능기부단체, 자원봉사센터 대표
가 위원의 과반수이어야 하고, 위원
장은 외부인사인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④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센터의 사무국장이, 서기는 센터의
기획총무팀장이 된다.

⑤ 위원회에서는 센터의 직원 임용
및 징계 등 인사관리를 위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인사소위원회를 구
성할 수 있다.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② ~ ④ (생략)

제8조(위원회 회의) ① (생략)

②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③ · ④ (생략)

⑤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성남시 행정기획조정실장은-----
----- 된다.

③ 재능기부단체 및 자원봉사단체 -----

-----.

④ -----

운영지원부장-----.

⑤ ----- 센터 직원의 -----

-----.

제6조(위원장 등의 임무) ① -----

총괄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위원회 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이상-----
-----.

③ · ④ (현행과 같음)

⑤ -- 규칙에서 -----

-----.

제9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센터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에 대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각종위원회 실비변상조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의 해임) 시장은 위원에게 위원직을 수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을 때 해임할 수 있다.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센터에 두는 인원은 센터장 1명과 사무국장 1명, 사업본부장 1명, 운영요원 10명 이내로 한다.

②·③ (생략)

제12조(직원임용) ① ~ ③ (생략)

④ 센터장은 센터의 직원을 공개경쟁을 통하여 채용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특별채용할 수 있다..

제16조(직원의 보수) ① 센터장은 5급 상당의 대우를, 사무국장 및 사업본부장은 6급 상당의 대우를, 운영요원은 6~9급에 상당한 대우를 하며 각각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단서 신설>

제9조(위원의 수당 등) -----

-----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

제10조(위원의 해촉) -----

--- 해촉-----

제11조(센터의 기구와 정원) ① -----

1명, 운영요원 13명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2조(직원임용)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 있다.

제16조(직원의 보수) ① -----
----- 사무국장-----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 다만, 코디네이터인 운영요

② 삭 제

③ (생 략)

④ 센터에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에서 보수 외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보수지급일, 지급방법 등
보수지급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
원보수규정」에 따른다.

⑥ 위탁의 경우 보수에 관한 사항은
수탁법인에 결정한다.

제17조(직원의 · 복무) ① 센터직원의
정년, 근무기간, 휴가, 출장 등 복무
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단, 보수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5항에 따른다.

② (생 략)

제23조(지도감독) ① (생 략)

② 지도감독 결과에 다른 시정 등의
조치는 반드시 문서로써 하고, 그 이
행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5조(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사
기진작) ① (생 략)

② 센터장은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
사자의 활동에 직접 사용하는 차량

원은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
영지침」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보수와 수당을 지급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센터 -----
----- 외에 -----
-----.

⑤ -----
----- 「지방공
무원 보수규정」-----.

⑥ -----
수탁법인에 -----.

제17조(직원의 복무) ① 센터 직원의
정년, 근무시간-----

-----.

② (현행과 같음)

제23조(지도·감독) ① (현행과 같음)

② ----- 따른 -----

-----.

제25조(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사
기진작) ① (현행과 같음)

② ----- 또는 -----

에 대하여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별지 제9호 서식) 발급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제2항에 따라 확인증을 발급한 경우에는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발급대장 (별지 제10호 서식)을 분기별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6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센터에 서는 다음 각 호의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관련 서식 및 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1.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참가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접수 및 배치대장 [별지 제2호서식]
3. 재능기부자 및 자원봉사자 카드
[별지 제3호서식]
4.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5.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확인서 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
6. 자원봉사센터 운영일지 [별지 제6호서식]

----- 확인증 -----

③ <삭 제>

제26조(재능나눔 및 자원봉사 서식 및 대장 비치) 센터장은 자원봉사의 진흥 및 지속적 관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

-----.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7.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증 [별지 제7호서식]

8.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자증 발급대장 [별지 제8호서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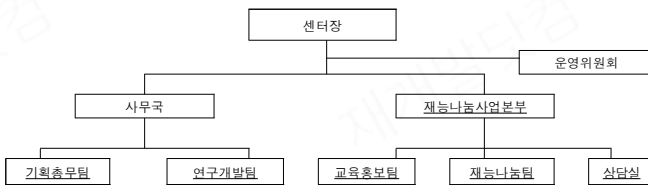
9. 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별지 제9호서식]

10.재능나눔 및 자원봉사활동 사용차량 확인증 발급대장[별지 제10호서식]

[별표 1]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성남시 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 기 구 〉



〈 정 원 〉

구분	계	센터장 (5급)	사무국장 (6급)	사업본부장 (6급)	운영요원	
					팀장(6~7급)	팀원(8~9급)
정원	13	1	1	1	5	5

- 센터장(5급) : 1명
- 사무국장(6급) : 1명
- 사업본부장(6급) : 1명
- 운영요원(6~9급) : 10명
 - 기획총무팀 2명 : 팀장 1명(6~7급), 담당자 1명(7~9급)
 - 연구개발팀 2명 : 팀장 1명(6~7급), 담당자 1명(7~9급)
 - 교육홍보팀 2명 : 팀장 1명(6~7급), 담당자 1명(7~9급)
 - 재능나눔팀 2명 : 팀장 1명(6~7급), 담당자 1명(7~9급)
 - 상 단 실 2명 : 팀장 1명(6~7급), 담당자 1명(7~9급)

[별표 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센터장	센터업무 총괄 및 직원관리	
사무국	국 장 ○직원 복무관리 ○행사관리 총괄 기 회 총무팀 ○시설 및 비품관리 ○자원봉사단체 관리, 표창 ○예산 및 회계 ○제증명 발급 ○문서관리 ○자원봉사 상해보험	

<삭 제>

<삭 제>

<삭 제>

<삭 제>

[별표 1]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의 기구와 정원

〈 기 구 〉



〈 정 원 〉

구분	계	센터장 (5급)	사무국장 (6급)	운영요원	
				부장 (6~7급)	담당 (8~9급, 기타)
정원	15	1	1	4	9

[별표 2]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 업무분장

구 분	업 무 내 용	비고
센터장	○센터 업무 및 대외 협력 총괄	
사무국장	○센터 행정, 사업 및 행사 총괄 ○조직 및 인사 관리 ○대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재능나눔사업본부		○각종행사 ○자원봉사 프로그램 추진 ○기타 타직원에 속하지 않는 업무	○긴급 재난재해업무 ○운영위원회 관련업무
	연구개발팀	○자원봉사자 및 활동수요처 모집 배치, 관리 ○자원봉사 활동수요처 개발 ○인터넷, PC통신 및 정보자료실 운영 ○자원봉사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 은행 ○봉사단 운영지원 ○청소년봉사활동	
	본부장	○재능나눔사업 총괄	○대의 협력 사업 총괄
	교육홍보팀	○자원봉사자 교육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 출판물 간행 ○자원봉사 홍보 ○자원봉사교육교재	○미담수범사례 발굴 ○자원봉사자 주간운영 ○사회봉사자 관리 ○학생자원봉사 순회교육
	재능나눔팀	○거버넌스-민간협력 재능나눔 기반 구축사업 ○지역공동체 협력사업 ○재능나눔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재능나눔 단체 및 수요관리 ○재능나눔 홍보 및 사업추진 ○재능기부자, 활동가 모집 관리	
	상담실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과 보급 ○자원봉사단체 및 수요처관리 ○자원봉사자 모집, 배치, 관리 ○자원봉사 포털시스템 운영 ○자원봉사홍보	○자원봉사은행 ○청소년봉사활동 지원 ○자원봉사자 기초교육 ○자원봉사 상해보험 ○시설 및 비품, 문서관리

[별표 3]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경력 및 자격 기준
공통 : 센터의 직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		1. 자원봉사관련학과 조교수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5.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사무국장(6급)		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7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사업본부장(6급)		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5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7급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운영요원	6급~7급	1. 자원봉사관련학과 학사학위이상 취득자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4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5년이상 경력이 있는사람
	8급~9급	1. 자원봉사관련 기관 단체에서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의 행정실무 3년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소지자

※ 자원봉사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운영지원부	○인사, 복무, 포상, 후생복지 관리 ○예산, 회계, 일반사무, 문서관리 ○시설 및 비품관리 ○재난재해 자원봉사 지원 업무 ○운영위원회 운영 업무
활동지원부	○자원봉사 단체·수요처 발굴 및 관리 ○자원봉사자 모집·배치 관리 ○자원봉사 관리시스템 운영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지원 업무
자원연계부	○지역 네트워크 연계 협력 사업 ○자원봉사 및 재능나눔 프로그램 추진 ○재능나눔 단체 및 수요관리 ○재능기부자, 활동가 모집 관리
성장지원부	○자원봉사 홍보 및 출판물 간행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자원봉사 교육 ○미담수범사례 발굴 ○자원봉사자 주간운영 ○청소년 봉사활동 활성화

[별표 3] 성남시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직원의 자격기준

구 분		경력 및 자격 기준
공통 :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센터장		1. 대학교의 자원봉사 관련 학과에서 조교수 이상의 직에 3년 이상 재직한 사람 2. 자원봉사단체·자원봉사센터 또는 사회복지기관·시설·학교·기업에서 자원봉사 관리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사람 3. 5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자원봉사 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임원으로 10년 이상 활동한 사람
사무국장(6급)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6급 이상 퇴직공무원으로 자원봉사업무 또는 사회복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4. 그 밖에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가 인정하는 사람
운영요원	7급	1. 자원봉사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3. 공공기관에서 5년 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9급	1. 자원봉사관련 기관·단체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공공기관에서 3년 이상의 행정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3. 사회복지사 또는 정보처리기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기타직(코디네이터)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행정안전부)에 따름

※ 자원봉사 관련학과 : 사회복지학, 사회사업학, 지역개발학, 사회학, 행정학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성 남 시 장

1. 개정이유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지자체 경쟁제한 및 소비자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 권고에 따라 과도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내용을 완화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함으로써 신뢰받는 건설행정을 구현하고자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과도한 경쟁 제한 조항 내용 완화(안 제1조, 제4조, 제6조, 제10조)
- “우선” 및 “우선적으로” 문구 삭제

3. 자치법규안 : 붙임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 2023년 10월 4일까지
- 나. 제출방법 : 서면 · 우편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 주소·성명·전화번호·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 성남시장(도로과)

- 주 소 :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 031-729-3622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건설근로자 우선”을 “지역건설근로자의”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우선 고용”을 “고용”으로 하고, “우선 사용”을 “사용”으로 한다.

제6조의 제목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을 “(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우선 사용하도록”을 “사용하도록”으로 한다.

제10조의 제목 “(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을 “(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고용안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우선 고용”을 “고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을 “고용하도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도 로 과
입 안 자	도 로 과 장	유 상 철
	기술심사팀장	김 도 일
	주 무 관 (연 락 처)	이 재 한 (729-3622)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남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및 <u>지역건설근로자 우선 고용</u> 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의 육성과 지역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u>지역건설근로자의</u> ----- ----- ----- -----.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생략) ② 지역건설산업체는 지역건설근로자의 <u>우선 고용</u> 과 지역 건설기계 <u>우선 사용</u> 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① (현행과 같음) ② ----- <u>고용</u> ----- <u>사</u> <u>용</u> -----.
제6조(<u>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우선사용</u>) ① (생략) ② 시장은 지역건설산업체의 자재 및 장비 사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내 생산자재를 관급자재로 공급하거나 건설업자가 <u>우선 사용하도록</u> 권장하여야 한다. 다만, 법 시행령 제8조의 경미한 공사를 제외한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을 포함하여 공급해서는 아니 된다. ③ (생략)	제6조(<u>지역 내 생산자재 및 장비의 사용</u>)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사용하도록</u> -----. ----- ----- -----.
제10조(<u>지역건설근로자 우선고용과 고용안정</u>) ① 시장은 시 공사에 참여하는 업체 및 지역건설산업체가 지	제10조(<u>지역건설근로자 고용과 고용안정</u>) ① ----- -----

역건설근로자와 지역 건설기계를 우선 고용 또는 사용하도록 권장하여야 한다.

② 지역 제한 입찰공사에 참여한 업체는 공사에 투입되는 보통 인부의 50퍼센트 이상을 지역건설근로자로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고용 -----
-----.

② -----

----- 고용하도록 -----
-----.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성 남 시 장

1. 제정이유

- 별다른 이유 없이 불특정인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로 고통받는 범죄피해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조속히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 제정 목적, 정의를 명시함(안 제1조~제2조)
- 나. 지원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
- 다. 지원내용 및 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제5조)
- 라.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마. 의료비 지원 위원회에 대해 규정함(안 제7조)
- 바. 개인정보 보호 및 비밀준수 의무를 규정함(안 제8조~제9조)

3. 자치법규안: 불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4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다. 기재내용: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라. 제출기관: 성남시장(공공의료정책관)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과 공공의료지원팀 (☎ 031-729-2193)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 의료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범죄피해자 보호법」, 「성남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에 따라 「이상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을 통해 범죄 피해자가 고통에서 벗어나 조속히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상동기 범죄”란 범죄의 동기가 뚜렷하지 않고, 불특정인을 대상으로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 이른바 “묻지마 범죄”를 말한다.
2. “강력범죄”란 살인, 강도, 강간 등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 처리지침” 제3조제1항의 범죄를 말한다.
3. “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피해자지원 담당자”란 검찰청 소속으로 경제적 지원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하는 피해자지원 법무담당관을 말한다.
5.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되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법무부에 등록한 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을 말한다.

제3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 대상은 이상동기 범죄 및 강력범죄 피해자로서 범죄피해 발생일부터 범죄피해자 지원 신청서 제출시까지 계속해서 성남시에 주소를 둔 사람으로 한다.

제4조(지원내용)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의 조속한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의료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범죄피해자가 「의료법」 제3조의 ‘의료기관’에서 회복을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

2. 범죄피해자의 치료 이후 상해(상처)관련 건강상태 확인을 위한 검진비
 3. 범죄피해자가 일상 회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범죄 피해로 발생한 흉터 성형외과 비용 및 치아 보철비
 4. 그 외 범죄피해자의 건강 회복을 목적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해당 범죄 발생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 받은 치료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아니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 범죄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검찰청 피해자지원 담당자, 경찰서 담당 수사관, 범죄피해자 지원센터 담당자 등 “범죄피해자 지원기관 담당자”가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위하여 국가,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관계 기관에 지원정보의 공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 신청에 대하여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경제적 지원, ‘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지원비, ‘스마일센터’의 지원비 등 다른 법령이나 제도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 지원 금액을 감액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신청에 따른 지원 결정 및 지원 금액은 지원 결정의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기관)에게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의 원활한 지원을 위하여 검찰, 경찰, 관련 법인, 단체 등 범죄피해자 지원 관련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협력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보 공유, 협력 등의 업무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7조(의료비 지원 위원회)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의결

및 자문하기 위하여 의료비 지원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신청한 총 의료비 금액이 5,000만원 이상인 지원 요청건
 2. 지원대상자 선정, 지급액 등에 관한 사항 자문
 3. 그 밖에 시장이 의료비 지원과 관련하여 논의가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항
- ② 위원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하며, 심의의 종료 시점에 해산된 것으로 본다.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성남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위촉한다.
1. 시장이 추천하는 사람 1명
 2. 성남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3. 의약계를 대표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4. 해당 사건 관할 경찰서 및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추천하는 사람 1명
 5. 성남시의 업무 부서 과장
- ⑤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제4항제5호에 따른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⑥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8조(개인정보 보호) ① 시장은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을 위해 취득한 개인정보의 관리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② 제1항의 취득한 개인정보는 사업추진을 위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이용되어야 한다.

제9조(비밀준수의 의무) 이 조례에 따른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원 업무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

서는 안 되며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지원하는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 적용례) 이 조례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이 조례의 시행일 이후 발생한 범죄의 피해자부터 적용한다.

소 관 과		공공의료정책관실
입 안 자	공공의료정책관	안 성 근
	공공의료지원팀장	최 현 숙
	주 무 관 (연 락 처)	김 도 균 (729-2193)

[별지 서식1]

범죄피해자 의료비 지급 신청(추천)서					
☐ 신청(추천)인(기관)					
성명 (기관명)			피해자와의 관계		
주 소	(연락처)				
☐ 범죄 피해자 정보					
사건번호	2023○○135 폭행		사 건 명		
피해자 성명			피해자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 지급계좌					
금융기관		예금주		계좌번호	
☐ 의료비 요청금액					
요청금액	원	치 료 비	원		
		상해(상처) 검사비	원		
		흉터 성형 및 보철비	원		
		그 외 비용	원		
위와 같이 범죄피해자 의료비를 신청(추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추천 기관)					
(서명 또는 인)					
성남시장 귀하					
☐ 유의사항	- 신청인은 본 의료비 신청과 관련하여 신청인 및 피해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등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성남시가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데 동의(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4조) 합니다. - 지원을 받은 후 지원 요건에 미비점이 밝혀진 경우, 허위 및 거짓으로 지원 신청시 지원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구비서류	1. 진단서(치료를 필요로 하는 기간 명시) 2. 상세 진료비 내역 3. 진료비 영수증 4. 가족관계증명서 등(피해자 본인과 관계를 입증할 서류)				

[별지 서식2]

범죄피해자 의료비 결정 통보서

☐ 범죄 피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 신청인(추천 기관)

성 명		관계	
-----	--	----	--

☐ 신청 결과

☐ 지급()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의 금액으로 지급 결정되었습니다.
2. 지원금액()원은 요청하신 계좌로 지급됩니다.

☐ 지급 제외()

1. 신청하신 의료비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지급 제외 결정 되었습니다.
2.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신청하신 범죄피해자 의료비 요청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결정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성남시 공공의료정책관실 ○○○
문의 연락처:

성남시장 (직인)

[별지 서식3]

범죄피해자 의료비 신청.지급 대장

연번	신청일	피해자		신청인		신청 내용	지원 신청액	심의대상 여부	지원 결정일	지원여부	지원 결정액	통보일	비고
		성명	생년월일	성명	연락처								
예시	00.00.00	홍길동	00.00.00	0000	031-123-4567	치료비, 요양비	500,000원	여	00.00.00	가	500,000원	00.00.00	00.00.00 심의 완료
1													
2													
3													
4													
5													
6													
7													
8													
9													
10													

비용추계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성남시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 조례안 제3조(지원내용), 제7조(치료비 지원 위원회)

나. 비용 발생 요인

- 이상동기 범죄 피해자 치료비 지원에 따른 사업수행 비용 발생
- 업무 수행을 위한 위원회 참여 위원 수당 지급 비용 발생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총 소요액: 756,000천원
 - 사업비: 750,000천원(치료비 지원사업비)
 - 운영비: 6,000천원(위원회 참여 위원 수당)

나. 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총 소요액	756,0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일반운영비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사업비	7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다. 재원조달방안 : 2024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제도개선 등 기타사항 : 해당없음

작성자 : 공공의료정책관 안성근

< 비용추계표 >

1. 세입·세출

(단위: 천 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세 입	-	-	-	-	-	-
-	-	-	-	-	-	-
세 출	756,0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일반운영비	6,000	1,200	1,200	1,200	1,200	1,200
사업비	75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150,000

2. 재원조달

(단위: 천 원)

구 분			계	1차연도	2차연도	3차연도	4차연도	5차연도
재원 조달			756,0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일반회계	의존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수입	소 계	756,0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지방세	756,0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151,200
		세외수입						
	특별회계							
	기 금							
	지 방 채							
	기 타 (채무부담, 민자 등)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9월 18일

성 남 시 장

1. 제정 이유

- 우리시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시정시책사업 등을 추진함에 있어 각계 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미래발전위원회의 기능 (안 제3조)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자문하고 건의·제안 사항을 명시

나. 미래발전위원회의 구성 (안 제4조)

-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
- 2) 위원의 위촉 기준 명시 등

다. 분과위원회 (안 제5조)

위원회 활동의 효율을 위한 5개 분과위원회 구성과 운영사항을
구체화

- 라. 위원장 등의 직무 및 위원의 임기, 회의운영 등(안 제6조부터 제9조
까지)
- 마. 관계부서의 협조(제10조)
- 바. 위원의 수당 등의 지급 근거(안 제11조)
- 사. 위원의 해촉 기준(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붙임

4. 의견제출

- 가. 제출기일: 2023년 10월 4일까지
 - 나. 제출방법: 서면 · 우편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
 - 다. 기재내용: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의견(찬 · 반 여부 및 그 사유)
 - 라. 제출기관: 성남시장(정책기획과)
 - 주 소: 성남시 중원구 성남대로 997(여수동, 성남시청)
 - 전 화: 성남시 정책기획과 기획팀 (☎ 031-729-2232)
 - 성남시 인터넷 홈페이지(로그인 후 이용 가능)
- <http://www.seongnam.go.kr> ⇒ 시민참여 ⇒ 입법예고 의견제출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제 정 안	검 토 의 건	
	수정안	검토사유

<붙임 1>

성남시 조례 제 호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에 따라 성남시의 도시 경쟁력 강화 및 미래발전 전략 수립 등을 위해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성남시 미래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하고 건의·제안을 할 수 있다.

1. 미래발전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주요시책 및 현안사항
4. 시정의 혁신 및 행정개선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요청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위원장은 분과위원장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연구기관 및 대학교에 종사하는 연구원, 교수 등 전문가
2. 각 분과위원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5조(분과위원회)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5개 분과위원회를 두며, 각 분과위원회 위원은 민간위원 7명 이내로 한다.

1. 시정혁신 분과위원회: 행정, 재정, 시정혁신, 거버넌스(협치) 등
2. 교육·문화·체육 분과위원회: 교육, 문화, 예술, 체육, 관광 등
3. 안전·사회복지 분과위원회: 안전, 복지, 보건 등
4. 4차산업 분과위원회: 경제, 산업, 일자리 등
5. 도시발전 분과위원회: 도시, 건설, 건축, 교통, 녹지, 환경 등

②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분과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분과위원장은 해당 분과위원회의 운영을 총괄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제7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8조(간사)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② 간사는 행정기획조정실 정책기획과장으로 한다.

제9조(회의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반기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④ 분과위원회 회의는 분과위원회 위원장이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0조(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는 데에 필요하면 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실무자 간의 협의·조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 의견 청취 등 협조를 구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의 지급)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과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공무원이 아닌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비밀준수 의무) 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항이나 비밀을 사적인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거나, 그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위원의 해촉)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제12조를 위반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질병이나 해외출장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제14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 관 과		정책기획과
입 안 자	정 책 기 획 과 장	유 형 주
	기 획 팀 장	최 선 영
	주 무 관 (연 락 처)	박 서 현 (729-2232)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계획(경미한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2008.11.26.)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되고, 성남시 고시 제2009-174호(2009.11.23.), 제2016-113호(2016.06.27.), 제2017-240호(2017.08.21.), 제2018-297(2018.12.17.), 제2019-284(2019.09.02.)로 정비구역 지정(변경) 및 정비계획(변경) 고시된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경미한 변경)을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 9. 18.

성 남 시 장

1. 정비사업의 명칭 : 성남 신흥2 주택재개발 정비사업(변경없음)

2. 정비구역 및 그 면적(변경없음)

3.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① 도로(변경)

■ 도로 결정 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50	보조간선 도로	676	신흥동 대2-1	신흥동 광2-2	일반도로	신흥 아파트	경기도고시 제136호 (87.5.15)	
변경	광로	3	6	40~50	보조간선 도로	676	신흥동 대2-1	신흥동 광2-2	일반도로	신흥 아파트	경기도고시 제136호 (87.5.15)	폭원 축소
기정	대로	2	1	30~35	주간선도로	3,100	태평동 광2-3	3호광장	일반도로	성남 초교	건교부고시 제354호 (76.3.27)	
기정	중로	1	2	20~30	주간선도로	950	대로2-1	중로2-28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05	15~20	국지도로	318	15호공원	중2-24 (신흥동 1232)	일반도로	희망대 초교	성남시고시 제96호 (96.12.3)	
기정	중로	2	131	15~23	집산도로	720	중로2-105	중로1-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32	15	집산도로	224	대로2-1	중로2-131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33	15	집산도로	257	중로2-131	소로3-17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129	중로1-2	중로2-13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43	15.5	집산도로	108	중로1-2	중로2-133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3	51	12~15	집산도로	280	대로2-1	중로2-13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소로	3	172	6	국지도로	47	중로2-133	소로3-173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92호 (1988.4.7)	
기정	소로	3	171	4	특수도로	28	연결녹지1	중로2-131	보행자 전용도로		성남시 고시 제2019-1284호 (2009. 9. 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6	광로 3-6	• L=676m(변경없음) • B=40~50m(일부폭원축소)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일부 저촉되는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하고 제척되는 부분 폭원 축소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노외 주차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70번지 일원	1,600	-	1,600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	노외 주차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67번지 일원	2,158	-	2,158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 2,158m ² /층 층수 : 지하 3개층

③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67번지 일원	4,078	-	4,078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노외주차장과 중복결정 면적 : 2,158m ² /층 층수 : 지하 3개층
기정	1	공원	소공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63번지 일원	755	-	755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④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322	-	4,322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	2,704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59번지 일원	2,464	-	2,464	성남시 고시 제2016-113호 (2016. 06. 27)	

⑤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번지 일원	55	-	55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신설	-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	증)1,555	1,555	-	
신설	-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일원	-	증)270	27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A	공공공지	• 신설 - A= 1,555㎡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일부 저촉되었던 광로3-6호선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하고 공공공지 시설로 변경
B	공공공지	• 신설 - A= 270㎡	

⑥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0번지 일원	1,050	-	1,050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4.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5.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① 건축물의 용도계획(변경없음)

구분		권장용도	허용용도	불허용도	비고
공동주택 용지	A	-	•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분양
	B	-	• 공동주택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임대
근린생활 시설용지		의료시설 중 병원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장 의사, 총포 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 위생정화 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
유치원용지		-	•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
종교시설용지		-	•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
공공청사용지		-	•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
사회복지 시설용지		-	•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
주차장용지		-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주차장 이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② 건축물 건폐율·용적률·높이(층수) 계획(변경없음)

구분	가구 또는 획지면적(m ²)	건폐율(%)	용적률(%)		층수	비고
공동주택	154,701	50 이하	기준	250.00 이하	-	A-1 ~ A-3, B
			허용	265.00 이하		
근린생활시설용지	838	80 이하	400 이하		5층 이하	C1, C2
유치원용지	601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F
종교시설용지	1,400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G1, G2
공공청사용지	1,050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D
사회복지시설용지	1,500	50 이하	250 이하		5층 이하	E
주차장용지	1,600	-	-		5층 이하	P

6.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6의2.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7. 정비사업의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변경없음)

7의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구단위계획(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신흥2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132번지 일원	210,733.3	-	210,733.3	

② 용도지역·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면적(m ²)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210,350	-	210,350		
상업지역	일반상업지역	1,275	-	1,275	0.6	
주거지역	소 계	209,075	-	209,075	99.4	
	제3종일반주거지역	166,742	-	166,742	79.3	
	준주거지역	42,333	-	42,333	20.1	

■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 분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m²)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수정로,희망로변 일반미관지구	일반 미관지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12,363	12,363	-	15		
기정	수정로,희망로변 방화지구	방화지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1,275	1,275	-	-		
기정	수정로,희망로변 최저고도지구	최저 고도지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651	651	-	15		
기정	수정로,희망로변 중심지미관지구	중심지 미관지구	성남시 수정구 신흥2구역	651	651	-	15		

③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조서(변경)

■ 도로(변경)

- 도로 총괄표(기정)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12	3,320	34,665.3	1	950	5,861	7	1,748	22,834.7	4	622	5,969.6
광로	1	267	2,854.2	-	-	-	-	-	-	1	267	2,854.2
대로	1	214	986	-	-	-	1	214	986	-	-	-
중로	8	2,764	30,416.7	1	950	5,861	6	1,534	21,848.7	1	280	2,707
소로	2	75	408.4	-	-	-	-	-	-	2	75	408.4

※ 연장 및 면적은 구역내 사항임

- 도로 총괄표(변경)

구분	계			1류			2류			3류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노선수	연장 (m)	면적 (m²)
합계	12	3,320	32,840.3	1	950	5,861	7	1,748	22,834.7	4	622	4,144.6
광로	1	267	1,029.2	-	-	-	-	-	-	1	267	1,029.2
대로	1	214	986	-	-	-	1	214	986	-	-	-
중로	8	2,764	30,416.7	1	950	5,861	6	1,534	21,848.7	1	280	2,707
소로	2	75	408.4	-	-	-	-	-	-	2	75	408.4

※ 연장 및 면적은 구역내 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구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3	6	40~50	보조간선 도로	676	신흥동 대2-1	신흥동 광2-2	일반도로	신흥 아파트	경기도고시 제136호 (87.5.15)	
변경	광로	3	6	40~50	보조간선 도로	676	신흥동 대2-1	신흥동 광2-2	일반도로	신흥 아파트	경기도고시 제136호 (87.5.15)	폭원 축소
기정	대로	2	1	30~35	주간선도로	3,100	태평동 광2-3	3호광장	일반도로	성남 국교	건교부고시 제354호 (76.3.27)	
기정	중로	1	2	20~30	주간선도로	950	대로2-1	중로2-28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05	15~20	국지도로	318	15호공원	중2-24 (신흥동 1232)	일반도로	희망대 초교	성남시고시 제96호 (96.12.3)	
기정	중로	2	131	15~23	집산도로	720	중로2-105	중로1-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32	15	집산도로	224	대로2-1	중로2-131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33	15	집산도로	257	중로2-131	소로3-17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42	15	집산도로	129	중로1-2	중로2-13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2	143	15.5	집산도로	108	중로1-2	중로2-133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중로	3	51	12~15	집산도로	280	대로2-1	중로2-132	일반도로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소로	3	172	6	국지도로	47	중로2-133	소로3-173	일반도로		경기도고시 제92호 (1988.4.7)	
기정	소로	3	171	4	특수도로	28	연결녹지1	중로2-131	보행자 전용도로		성남시 고시 제2019-284호 (2019. 9. 2)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광로 3-6	광로 3-6	• L=676m(변경없음) • B=40~50m(일부폭원축소)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일부 저축되는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하고 제척되는 부분 폭원 축소

■ 주차장 (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	노외 주차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70번지 일원	1,600	-	1,600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	노외 주차장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67번지 일원	2,158	-	2,158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어린이공원과 중복결정 면적 : 2,158m²/층 층수 : 지하 3개층

■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원	어린이 공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67번지 일원	4,078	-	4,078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11.26)	노외주차장과 중복결정 면적 : 2,158m²/층 층수 : 지하 3개층
기정	1	공원	소공원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63번지 일원	755	-	755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11.26)	

■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m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녹지	연결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322	-	4,322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2	녹지	경관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	2,704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기정	3	녹지	완충녹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59번지 일원	2,464	-	2,464	성남시 고시 제2016-113호 (2016. 06. 27)	

■ 공공공지(변경)

- 공공공지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번지 일원	55	-	55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신설	-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	증)1,555	1,555	-	
신설	-	공공공지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일원	-	증)270	270	-	

- 공공공지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공공지	• 신설 - A= 1,555㎡	•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에 일부 저촉되었던 광로 3-6호선 부분을 구역에서 제척하고 공공공지 시설 로 변경
-	공공공지	• 신설 - A= 270㎡	

■ 공공청사(변경없음)

- 공공청사 결정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 청사	공공 청사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0번지 일원	1,050	-	1,050	성남시 고시 제2008-136호 (2008. 11. 26)	

④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A-1	-	65,03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분양
A-2	-	43,96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분양
A-3	-	27,90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분양
B	-	17,79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임대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C1	-	77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773	
C2	-	6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29번지 일원	65	

■ 공공청사·주차장·종교·사회복지시설·유치원용지·공원·녹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²)	
D	-	1,05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0번지 일원	1,050	공공청사
E	-	1,5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1,500	사회복지
F	-	60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84번지 일원	601	유치원
G1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15번지 일원	700	종교
G2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700	종교
H1	-	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번지	55	공공공지
H2	-	1,5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1,555	공공공지
H3	-	31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일원	270	공공공지
I	-	4,07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0번지 일원	4,078	어린이공원
J	-	7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63번지 일원	755	소공원
K1	-	4,32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322	녹지
K2	-	2,70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녹지
K3	-	2,46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9번지 일원	2,464	녹지
P	-	1,6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70번지 일원	1,600	주차장

⑤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대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 ~ A-3, B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50%이하(단, 허용용적율 265%이하)
		층수 및 높이		비행안전구역고도제한 허용높이 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2장 제6조 내지 제10조를 따른다.

■ 근린생활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C1, C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 829번지 일원	용 도	권장용도	◦의료시설 중 병원
			허용용도	◦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장 의사, 총포판매소,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안마원 제외) ◦교육연구시설 중 학원, 도서관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80%이하
		용 적 륜		400%이하
		층수 및 높이		3층이상 /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3장 제4조 내지 6조를 따른다.

■ 공공청사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D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0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사회복지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E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노유자시설 중 사회복지시설. 단, 노인복지주택은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유치원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F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84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노유자시설 중 유치원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50%이하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종교시설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G1 G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15, 2408번지 일원	용 도	허용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및 그 부속용도(납골당 제외)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륜	250%이하
		층수 및 높이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 주차장용지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P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70번지 일원	용도	허용용도	- 노외주차장 -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 ※ 단, 주차전용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주차장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단서 규정의 주차장 이외 용도와 복합적으로 건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70퍼센트 이상이어야 함.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내 금지행위에 해당하는 사항
		건 폐 율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용 적 륜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름
		층수		5층이하
		배치 및 건축선		건축물의 배치 및 건축선은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색 채		시행지침 제4장 제4조 내지 7조를 따른다.

8.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없음)

9.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0.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정비 기반시설	계		도로		주차장	공원	녹지	공공공지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면적(㎡)	50,643.3	50,643.3	34,665.3	32,840.3	1,600	4,833	9,490	55	1,880

11. 2이상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없음)

1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3.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해당없음)

14. 가구 및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공동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A-1	-	65,144	65,03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556번지 일원	65,034	분양
A-2	-	43,967	43,96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718번지 일원	43,967	분양
A-3	-	27,907	27,907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383번지 일원	27,907	분양
B	-	17,793	17,79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67번지 일원	17,793	임대

■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C1	-	773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1번지 일원	773	
C2	-	6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29번지 일원	65	

■ 공공청사·주차장·종교·사회복지시설·유치원용지·공원·녹지(변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D	-	1,05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40번지 일원	1,050	공공청사
E	-	1,5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377번지 일원	1,500	사회복지
F	-	601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84번지 일원	601	유치원
G1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015번지 일원	700	종교
G2	-	7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08번지 일원	700	종교
H1	-	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25번지	55	공공공지
H2	-	1,5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1,555	공공공지
H3	-	31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748-1번지 일원	270	공공공지
I	-	4,078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0번지 일원	4,078	어린이공원
J	-	755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63번지 일원	755	소공원
K1	-	4,322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028번지 일원	4,322	녹지
K2	-	2,70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2423번지 일원	2,704	녹지
K3	-	2,464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1979번지 일원	2,464	녹지
P	-	1,600	성남시 수정구 신흥동 870번지 일원	1,600	주차장

15.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16. 정비사업 시행자 : 한국토지주택공사(변경없음)

17. 고시도면 : 게재생략

18. 관계도서 : 성남시청 재개발과(031-729-4424)에 관련도서를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하천 점용허가 고시

「하천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허가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2023. 9. 18.

성 남 시 수 정 구 청 장

□ 점용허가 내역

허가 번호	하천 명칭	토지위치	구역	점용목적	면적	점용기간	점 용 자	
							주 소	성 명
2023-10	탄천	수정구 둔전동 211-1번지 외 11필지	하천 구역	국군의 날 행사 시 주차장 사용	15,762㎡	2023. 9. 23. ~ 2023. 10. 7.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동3가)	국방부

※ 관계 도면, 조서는 수정구청 건설과에서 열람. 끝.

성남시 분당구 고시 제2023-31호

고 시 문

1. 하천법 제33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38조에 따라 하천 점용을 허가하고 허가내용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분당구 구조물관리과에 비치하여 열람하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18일

성남시 분당구청장

하천의 명칭	탄 천		
점용자의 성명	주재넷(주)	점용자의 주소	서울시 송파구 범원로 90, 5층 502호 (문정동, 파트너스 2)
점 용 위 치	구미동 99번지	점 용 면 적	4㎡
점 용 목 적	하천 내 수위 등 변화량 측정을 위한 촬영 및 계측	점 용 개 요	
점 용 기 간	2023. 9. 1. ~ 2024. 8. 31.	기 타 사 항	